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4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 등 협력 요청	2
2.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지원	4
※ 참고자료	7
1. 최근 5년 방재기상지원관 파견 현황	7
2. 예보 현업인력 및 예보관 현황	8
3.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현황	9
4. 기상청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황 및 역할·임무	10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1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 등 협력 요청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협력 요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① ----- ----- ----- ----- ----- -----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협력</u>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u>협력</u> -----. -----.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대응 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기상정보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지원

현행법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상청장이 예보관 등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기술·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3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생략)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u>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 ----- ----- ----- ----- <u>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재 기상청은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4명을 파견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민간인 신분의 방재기상지원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광역시·도에 파견·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17개 광역시·도 모든 기관에 방재기상지원관(참고자료 1)을 파견하지 못해 지역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상 그 책임과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기상 발생시 근로기준법상 비상근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위험기상 발생시 실무상 기상청은 재난현장 인근의 각 지방기상청 소속 예보관(참고자료 2) 등이 출장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재난 대응이라는 엄중한 업무의 특성상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기상청 예보관)을 파견²⁾하여 지자체의 방재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대상 인력을 예보관 등으로 명시하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³⁾ 등 필요한 기술과 기상관측차량 등 관측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⁴⁾, 기관 간 협력체계(참고자료 3) 및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1) 기상청 예보관 파견 현황: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5급 4인

2) 다만, 현장 파견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 재난대응 유관부처 담당자에게 대국민 대상의 홈페이지보다 상세한 기상정보, 예·특보 관련 자료 등 예보관 활용자료와 같은 수준의 자료를 표출·검색,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4) 기술 장비 등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있어 보임

서 타당해 보임.

이에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기상 현상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방재기상지원관을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파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기상 예상 또는 발생 시 방재기상지원관을 비롯한 기상청 예보관을 파견하여 위험기상 대응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 2023년 충남·경북·전남 대형산불 진화 지원 사례]

구분	지원인력	관측차량	이동형AWS	현장 브리핑	산불진화 용 기상정보
홍성군 서부면	5명 (대전청 예보과장, 홍성대장, 관측자 등)	대전청 1대 (2023. 4. 2. 18:00~16:00)	-	15회	18회
금산군 북수면	4명 (대전청 전문관, 관측자 등)	1대 (광주청 협조/ 2023. 4. 3. 09:00~4. 4. 16:40)	1대 (대구청 협조/ 2023. 4. 3. 09:50~4. 4.16:40)	4회	16회
영주시 평온면	2명 (대구청 예보과장 등)	-	-	2회	6회
함평군 대동면	4명 (광주청 예보과장,관측자 등)	광주청 1대 (2023. 4. 4. 09:00~15:40)	-	8회	8회
순천시 송광면	5명 (광주청 전문관,관측자 등)	1대 (부산청 협조/ 2023. 4. 4. 08:30~15:10)	-	20회	7회

자료: 기상청 제공

문 의 처

02)6788-5542

참고자료 1 최근 5년 방재기상지원관 파견 현황

파견지역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서울	1명	1명	1명	1명	1명
인천	1명	1명	1명	1명	1명
강원	1명	1명	1명	1명	1명
대전	1명	1명	1명		
세종			1명(한시파견)	1명(한시파견)	1명(한시파견)
충남			1명(한시파견)	1명	1명
충북	1명	1명	1명	1명	1명
부산	1명	1명	1명	1명	1명
울산			1명(한시파견)		
경남					
대구	1명	1명	1명	1명	1명
경북	1명	1명	1명	1명	1명
광주			1명(한시파견)	1명(한시파견)	1명(한시파견)
전남	1명	1명	1명	1명	1명
전북	1명	1명	1명	1명	1명
제주	1명	1명	1명	1명	1명
계	11명	11명	15명	13명	13명

※ 채용기관(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파견기관 결정

※ 경기 : 경기도에서 자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중

참고자료 2 예보 현업인력 및 예보관 현황

	예보 현업인력(명)	예보관*(명)
본청	44	16
수도권청	16	4
부산청	12	4
광주청	12	4
강원청	12	4
대전청	8	4
대구청	12	4
제주청	8	4
전주지청	8	4
청주지청	8	4
총합	140	52

* 예보관: 예보 현업인력 중 예보판단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5급 이상 또는 예보팀장

참고자료 3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현황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 (제34조의5)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안전부 등)에서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정보 전파
 - (제38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기상청)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

□ 기관 간 협업 사례

- (예·특보 전달·통보) 긴급재난문자(행안부 협조), 재난방송(과기부·방통위 협조), 취약계층 기상정보 전달*(지자체 등 협조) 등을 통한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
 - * CCTV 음성송출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한 기상정보 제공(지자체 협조) 건설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협조)
- (예·특보 활용)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 운영, 언론 및 방재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정례적 예보브리핑 실시 등을 통한 방재업무 담당자의 기상정보 활용성 강화
- (대책 수립 지원) 중대본·지대본, 물관리기관 등 상황판단회의에 예보관이 참여하여 기상전망 설명, 산불·해양사고 등 재난 현장 대응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등
- (방재기상지원관 파견) 광역시·도의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파견(11명)·운영 중
 - * 지자체 관할구역을 전담하여, 태풍·호우·폭염 등 위험기상 예상·발생 시 집중 분석 및 브리핑, 재해 발생위험 지역 기상실태 집중감시 및 상세기상정보 제공 등

참고자료 4 기상청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황 및 역할·임무

□ 기상청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황

- (종류)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대형 화산폭발, 가뭄, 조수, 우주전파, 산사태, 낙뢰, 폭염,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전안전 등 총 15종

※ 기타 해양사고, 대형화재 시 현장 기상지원 실시

□ 주요재난 기상청 기상청 역할 및 임무

- (기본임무)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기상상황 감시·분석, 기상정보 전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력

구분	중수본 운영 및 범정부적 총력단계 역할·임무
산불	• 산불재난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운영 - 관할 기상관서에서 기상전문가 파견 - 산불지역 상세기상정보 제공 - 산불장소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
산사태	• 산사태재난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운영 - 관할 기상관서에서 전문가 파견(필요시) - 산사태지역 상세기상정보 제공
원전안전 분야	• 특별대응반 설치 지시 - 상세기상자료 제공 - 현장방사능지휘센터 등에 현장요원 파견(요청시)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 특별대응반 설치 지시 - 인접국사고대응본부 실무반요원 파견(요청시)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등 기상정보 지원 - 요청시 공중방사선 탐사를 위한 항공기 지원(요청시)
해양사고	• 해양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기상지원 요구 시 - 선박 및 헬기운항 등에 필요한 상세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 요청시 기상전문가 파견 및 기상관측선 지원(대형 선박사고 등)